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48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 박덕흠 · 고동진 · 윤한홍

서천호・구자근・김선교

엄태영 • 박성민 • 강승규

정희용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

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법률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 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수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마.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바.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제3호의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제3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 나.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른 보상 금을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상금) ① ~ ③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4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	
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
<u>을 우선한다.</u>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
	<u>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u>
	<u> 족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u>령령으로 정한다.</u>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
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	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	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 급한다.

- <u>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의료급여 수급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
 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u>마. 「장애인연금법」 제2조</u> <u>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u> <u>수급자</u>
- 바. 「기초연금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
-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 설>

<u>다.</u>

가. 제3호의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제3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나.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
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
여 지급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